
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

- 산입범위 개편 -

2018. 6. 7.

Ⅰ. 최저임금제 개요	1
Ⅱ.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	3
Ⅲ.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	4
[붙임]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	7

고용노동부

I. 최저임금제 개요

1 최저임금제 의의

-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,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 - * '18년 최저시급 7,530원 → 월 환산액 157만원(주 40시간,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)
-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실현되면 최소한 월 209만원 이상(주40시간 기준) 받게 되므로 저소득노동자의 소득 향상 가능
 - 아울러,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 → 내수 활성화 →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Key
- '18년 적용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7만명(전체의 18%)
 - 이들은 '17년 시급이 '18년 최저임금 7,530원보다 낮아 '18년에 임금 인상이 필요한 사람들
 - 277만명 중 약 80%는 청년·여성·고령층 등 취약계층 노동자

2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(=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)

-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(=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)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·분기별 정기상여금, 숙박비·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됨
 -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(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, 동법 시행규칙 별표1)

최저임금에
포함되는 임금
(산입범위)

=

노동자가
받는 임금

-

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
(상여금·정근·근속수당 +
숙·식비 등 복리후생수당 전체)

-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말은 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
 - *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가 받는 임금 대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
- '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 →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

3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 경과

- 그간 노사와 전문가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에서,
 - 최저임금위는 '18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시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정부에 건의키로 노·사·공 합의('17.7.15.)
 - 이에 따라, '17.9~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노·사가 제기한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, TF안 발표('17.12.22)
 - '18.1월부터 최저임금위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, TF안을 정부에 이송('18.3.7)
-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('18.4.11) 및 노·사 의견수렴(4.13) 실시 후 법안심의(5.21, 5.24, 5.25)
 -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(대안의결, 5.25), 본회의 통과(5.28)
 - 국무회의 의결(6.5)

II.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('19.1.1 시행)

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.
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

-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(초과근로수당 등)
- ② 상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%에 해당하는 부분
- ③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㉠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 - ㉡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%에 해당하는 부분

□ 이에 따라,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%(정기상여금 연 300%)와 7%를 초과하는 부분*은 최저임금에 산입

* '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, 최대 50여만원 = 157만원 × 32%

○ 다만,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'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

[정기상여금,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]

☞ 정기상여금,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~
정기상여금	25%	20%	15%	10%	5%	0%
현금성 복리후생비	7%	5%	3%	2%	1%	0%

□ 또한,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,

-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
-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Ⅲ.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

1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

-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
 - 3~4천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,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
 -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음
- ②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
 -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받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항목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심화

[상여금 유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]

구 분	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인상 효과 ('17년 6,470원 → '18년 7,530원)	비 고
기본급 + 정기상여금 無	연 264만원 ↑ (22만원 × 12월)	정기상여금으로 인해 연 132만원 차이 발생
기본급 + 정기상여금 연 600%	연 396만원 ↑ (22만원 × 18월)	

*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여 받는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면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정기상여금 인상으로 이어져 정기상여금이 없는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심화

- ③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
 - 연소득 2,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, 정기상여금,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%, 7%를 넘는 부분만 산입
 -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 되도록 배려
- ④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 마련

2 산업범위 개편 영향분석

❖ 산업범위 개편 시,

실질적으로 저임금계층(소규모사업체 소속, 1~2분위 근로자 등)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계층(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)이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남

① 산업범위 개편으로 인한 최저임금 영향률* 분석

* 영향률: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

- 산업범위 개편 후에도 기존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던 노동자의 91%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,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(9%만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남)
- 최저임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,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음(영향률 증감률이 큼)

[산업범위 개편 후 사업체 규모별 영향률]

(단위: 천명, %)

구 분	근로자	영향률		영향률 증감률
		현행	개정	
전 규모	15,354	21.6	19.7	-9.0
1~4인	4,077	38.9	36.6	-5.9
5~9인	2,036	22.2	20.8	-6.2
10~29인	2,895	17.6	15.9	-9.8
30~99인	2,661	15.9	13.8	-13.1
100~299인	1,739	14.8	12.3	-17.0
300인 이상	1,947	4.6	3.2	-30.2

*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※ 자료: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년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년

-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근로자일수록 임금 중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품의 비중이 낮고 금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산업범위 개편 후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작음

② 최저임금 인상 시, 연소득 2,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

- 연소득 약 2,500만원 이하(소득 1~3분위)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최소 93.3%(최소 301만8천명)는,
 - 산입범위 개편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
- 다만,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% 또는 7%를 넘는 최대 6.7%(최대 21만6천명)의 노동자는,
 - 산입범위 개편 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임금인상은 아닐 수 있다고 추정(인상효과가 0%라는 의미는 아님)

[산입범위 개편 후 근로자 소득분위별 영향률]

(단위: 천명, 천원, %)

구분	근로자	평균 임금	영향률		영향 근로자수			영향률 증감률
			현행	개정	현행(A)	개정(B)	차(A-B)	
전 규모	15,354	2,530	21.6	19.7	3,318	3,021	-297	-9.0
1/5	3,172	824	66.9	65.4	2,122	2,075	-47	-2.2
2/5	3,037	1,476	30.9	28.2	939	855	-84	-8.9
3/5	3,025	2,005	5.7	2.9	174	88	-85	-49.1
4/5	3,057	2,861	1.7	0.1	51	2	-49	-96.0
5/5	3,063	5,528	1.1	0.0	33	0	-33	-100.0

주1) 임금수준 = 정액급여 + 고정상여금

2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※ 자료: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년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년

붙임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

↳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('19년 최저임금 10% 인상 가정)

<연간 월급총액 2,500만원 이하>

① [음식점] 연간 월급총액 2,004만원(기본급 157만원, 식비 10만원)

⇒ 식비(복리후생수당)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
기본급 10% 인상 효과

급여 항목	'18년		'19년	비 고
기본급	157만원		173만원	16만원 ↑
정기상여금	없음		없음	없음
복리후생비	10만원	⇒	10만원	최저임금 미산입
월급여액	167만원		183만원	16만원 ↑
연간 월급총액	2,004만원		2,196만원	192만원 ↑

② [아파트관리업] 연간 월급총액 2,472만원(기본급 157만원, 정기상여금 39만원, 복리후생수당 10만원)

⇒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
기본급 10% 인상 효과

급여 항목	'18년		'19년	비 고
기본급	157만원		173만원	16만원 ↑
정기상여금	39만원		39만원	최저임금 미산입
복리후생비	10만원	⇒	10만원	최저임금 미산입
월급여액	206만원		222만원	16만원 ↑
연간 월급총액	2,472만원		2,664만원	192만원 ↑

③ [주유소] 연간 월급총액 2,046만원(기본급 157만원, 식비 13.5만원)

⇒ 식비(복리후생수당) 1.5만원 산입, 연간 월급총액(8.5%~) 인상

급여 항목	'18년	'19년	비 고
기본급	157만원	171.5만원~	14.5만원~ ↑
정기상여금	없음	없음	없음
복리후생비	13.5만원	13.5만원	최저임금 산입(1.5만원)
월급여액	170.5만원	185만원~	14.5만원~ ↑
연간 월급총액	2,046만원	2,220만원~	174만원~ ↑

<연간 월급총액 2,500만원 초과>

④ [제조업] 연간 월급총액 2,688만원(기본급 157만원, 정기상여금 50만원, 복리후생수당 17만원)

⇒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수당 각 7만원, 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, 연간 월급총액(1.8%~) 인상

급여 항목	'18년	'19년	비 고
기본급	157만원	161만원~	4만원~ ↑
정기상여금	50만원	50만원	최저임금 산입(7만원)
복리후생수당	17만원	17만원	최저임금 산입(5만원)
월급여액	224만원	228만원~	4만원~ ↑
연간 월급총액	2,688만원	2,736만원~	48만원~ ↑

⑤ [마트업] 연봉 2,748만원(기본급 199만원, 복리후생수당 30만원)

⇒ 복리후생수당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

급여 항목	'18년		'19년	비 고
기본급	199만원		199만원~	
정기상여금	없음		없음	없음
복리후생비	30만원	⇒	30만원	최저임금 산입(18만원)
월급여액	229만원		229만원~	
연간 월급총액	2,748만원		2,748만원~	

⑥ [건설업] 연봉 2,856만원(기본급 162만원, 정기상여금 46만원, 복리후생수당 30만원)

⇒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수당 각 3만원,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

급여 항목	'18년		'19년	비 고
기본급	162만원		162만원~	
정기상여금	46만원		46만원	최저임금 산입(3만원)
복리후생비	30만원	⇒	30만원	최저임금 산입(18만원)
월급여액	238만원		238만원~	
연간 월급총액	2,856만원		2,856만원~	